

별첨1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공공기관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평가기관		(주)에이스솔루션	평가기간	2024.07.22 ~2024.11.08	평가예산	☐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평가대상시스템 개요	시스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세대 주거급여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	2024.04.22 ~2025.02.21
	추진개요 및 목적	- 주거지원 확대 정책으로 주택조사 물량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 - 변화하는 ICT 기술을 적용하여 주택 조사원의 효율성·안정성 개선, 국민입장에서의 편의성·권리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최근 정보기술 적용을 통한 사용자 중심 기능구현,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새로운 주거 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시스템 구축				
	추진성격	대상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의 기준 중 480만 명 이상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예상됨		추진예산	6,037,185,461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진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계획처 주거급여사업팀			
		추진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5조		추진유형	☐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
신기술 유형	해당 없음					
주요내용	- 수급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전등록 서비스 - 조사 업무 자동 배정 제공 시스템 - 기관 간 연계로 등기부등본 등 공부 정보 자동 입수 - 법적 증거력 확보를 위한 전자문서 처리 기능구현 - 주거급여 정보시스템(Web) 고도화 - 조사 업무 모바일 시스템(App) 고도화 - 주택수선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 데이터 신뢰도 향상 및 분석 환경조성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도사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운용체계 변경내용 (변경인 경우)	해당 없음			
개 인 정 보 파 일 개 요	파일명	정보주체 수(건)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 목적
	조사접수	4,868,423 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택구분, 대상자구분, 위험가구여부	-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접수 및 조사담당자 배정 처리 업무
	주택조사	4,868,423 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택구분, 대상자구분, 위험가구여부	-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34조, 주거급여법 제11조, 제13조 및 제17조 - 제공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수신자: 사회보장정보원 - 제공목적: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조사 - 제공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계약형태, 접수일자, 주거유형, 조사불가사유, 방문사진, 도서산간여부, 장애인 및 고령자여부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에 대한 주택조사 및 확인 처리 업무
	주택상태평가 및 연간 수선계획	159,624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계약내용, 연락처, 수선유지비용, 주택정보, 장애여부(가구원)	-	주택상태에 대한 안전성 여부 파악하여 보수 대상선정 및 연간 수선 계획수립 업무처리
	개보수공사	1,232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계약내용, 감독관명, 감독관연락처, ID, PW	-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34조, 주거급여법 제11조, 제13조 및 제17조 - 제공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수신자: 사회보장정보원 - 제공목적: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 공사 - 제공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책정일, 장애여부, 가구주_주체_ID	수선물량에 대한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와 하자처리에 대한 관리업무

	주거급여 담당자	4,811건	성명, 사번, 사내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직급, 직위, 성별, 부서명, 재직상태코드, 위치정보	-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및 주택상태 조사 업무처리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1. 개인정보 수집, 보유·이용, 제공, 위탁, 파기 등 Life Cycle - 조사접수 : 행복e음을 통해 신청한 주거급여 주택조사 의뢰 정보(지자체: 신규/수시, 이의신청) 등의 주거급여 대상자를 일일 단위로 일괄 주거급여시스템으로 접수 처리됨. 수집된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 수시/확인 조사 대상자를 추출하여 지역 본부에 배정하고, 조사 대상을 확인함. 조사 대상 확인 시에 현장 방문 대상자를 배정하고, 수급 대상자에게 알림톡을 발송함. 현장 방문이 필요하지 않은 수급대상자는 방문 외 조사 담당자를 배정 처리함. 조사 담당자가 배정된 수급 대상자를 관할 사무소로 이관하여 접수사업소를 신규 생성 처리함. 수집한 고객 자료는 목적 달성 후 파기함. - 주택조사 : 행복e음을 통해 신청한 주거급여 주택조사 의뢰 정보(지자체: 신규/수시, 이의신청) 등의 주거급여 대상자를 일일 단위로 일괄 주거급여시스템으로 접수 처리됨.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 및 사전 조사 안내와 함께 주택 유형, 시설, 환경 등의 정보 등록 처리. 등록된 조사 대상 주택에 대하여 임차 현황이나 자가 현황 등을 조사하고, 주택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조사 불가 통보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수급대상자에게 통보 처리함. 이때 주택유형, 시설, 환경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을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대장을 접수하여 관련 정보를 등록 처리함. 조사가 끝나면 승인 처리하고, 결과를 행복e음에 전송 처리함. 고객 수집 자료는 목적 달성 후 파기함. - 주택상태평가 및 연간수선계획 : 행복e음을 통해 주택 안전성 평가 대상 자료 수신하여 주택 상태 평가 대상 확인. 확인된 주택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 대상에 등록 처리하고, 평가 대상에 대한 수시 조사 요청함. 주거급여 담당자는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시군구 담당자와 보수 대상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함. 보수 대상에 대한 타당성이 확인되면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선 물량을 생성 처리함. 확정된 수선 물량에 대하여 시군구 지자체 담당자와 수선협약을 체결함. 고객 수집 자료는 목적 달성 후 파기함. - 개보수공사 : 각 시군구 지자체는 수선 물량에 대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면, 각 공사업체는 주거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의 공사업체를 등록 처리함. 각 시군구 지자체는 등록된 공사업체를 확인하여 공사계약을 수기 체결함. 공사업체와 계약이 체결되면 공사등록과 함께 담당 감독관을 배정하고 공사 배정함. 공사업체에 공사가 배정되면 공사업체는 공사계약 사항 및 공사내역을 주거급여시스템에 등록 처리함. 등록된 공사내역에 대하여 승인 처리와 함께 공사내역을 관리하고, 그 정보를 행복e음에 공사내역을 통보함. 공사에 대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와 관리가 이루어짐. 주거급여 수급자 자료 및 공사업체 자료는 목적달성 시, 공사업체 회원 정보는 탈퇴 시 파기함. - 주거급여 담당자 : 행복e음을 통해 수집된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 주택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상기관은 주택 조사원을 선정하고 현장 조사를 위한 모바일(태블릿 PC)을 배포하며, 주거급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 앱을 설치하여 주거			

		급여 서버와 양방향 통신 업무가 가능하도록 처리함. 대상기관은 현장 조사원의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조사원이 소지한 모바일의 위치를 추적, 출근 정보와 퇴근 정보를 수집하여 서버에 저장하고 근태관리로 활용함. 수집된 조사원 자료는 퇴직 시 파기함. 2.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붙임 1 참조)
영 향 평 가 기 준	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	- 평가지표 추가 - 4.8.5 : 클라우드 보안 - 평가지표 삭제 - 5영역(특정 IT 기술사용) 중 CCTV(6), RFID(7), 생체인식정보(2), 가명정보(9), 이동형영상처리기기(4) 총 28개 항목
	주요 평가기준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을 위한 평가항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 별표4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안내서의 부록3에 근거하여 5개 평가영역, 25개 평가분야, 107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함. ✓ 당해 사업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인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생명주기 별 침해요인 존재 여부 ✓ 영향평가 점검표 기준으로 영향평가 결과 침해사항 발생 여부 ✓ 침해 사항별 수행 가능한 기간별 개선방안 제시 여부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차세대 주거급여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34조, 주거급여법 제11조, 제13조 및 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차세대 주거급여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6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6조 및 제27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음. 2.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차세대 주거급여정보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정보보안지침」에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개인정보취급자별로 책임추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별 계정을 부여,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접근통제 조치, 개인정보 암호화 등을 법령에 맞게 수행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모든 항목, 즉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게시되어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9조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포함하여 그 내용이 공개되고 있으며, 다만 관리자 로그인 인증 강화와 접근권한 변경이력 관리의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또한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책임추적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한 기능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	- 관리자 계정 로그인 시 계정의 소유자에게 로그인 사실을 SMS 등으로 알리는 기능 구현해야 함(4.1.7) - 차세대 주거급여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이 부여된 모든 계정에 대하여 신청 정보, 승인 정보, 등록 정보, 권한명, 특이사항 등이 모두 포함하여 기록하고 별도 조회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4.1.9) -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IP주소,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및 수행업무를 반드시 포함하여 전자적으로 기록하여야 함(4.4.1)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 사유를 입력한 경우에만 실행이 되도록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 내용에 다운로드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함(4.4.2) - 접속기록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D-ROM, WORM(Write Once Read Many) 등과 같은 덮어쓰기 방지 매체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4.4.3)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 차세대 주거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자 등 로그인 시 알림 기능을 구현하지 않으면 해당 계정이 악의적인 자에게 탈취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변경이력을 관리하지 않으면 개인정보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책임추적성이 확보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관련 업무취급자의 접속에 관한 이력추적을 할 수 없음. - 개인정보 접속기록 중 다운로드 사유를 기록하지 않거나 정기 점검 시 확인하지 않으면 대량의 개인정보 조회, 다운로드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수 없음. - 접속기록이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하지 않아서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워지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평가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차세대 주거급여정보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화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의 기준에 의하여 「차세대 주거급여정보시스템」이 약 48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고 있으므로 영향평가 의무 수행 건수를 충족하고 있음. 따라서 「차세대 주거급여정보시스템」 수행업무에서 식별된 조사접수, 주택조사, 주택상태평가 및 연간수선계획, 개보수공사, 주거급여 담당자 등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안내서”(2024년04월 개정)를 기준으로 80개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점검을 수행한 결과, 5건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 이행률은 96.4%로 우수한 편임.

[조사접수]

정보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계기관

[주택조사]

정보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계기관

[주택상태평가 및 연간수선계획]

정보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계기관

[개보수공사]

정보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계기관

[주거급여 담당자]

정보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계기관

